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영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8.

발의자 : 윤영석 · 김대식 · 서일준

이종배 · 임종득 · 조경태

최형두 · 유용원 · 강명구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음. 후계농이 적정하게 양성되지 못할 경우 농업의 지속성과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의 약화가 예상됨. 실제로 2015년 국가 전체의 고령화율은 13.2%에서 2023년 18.6%으로 증가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2015년 38.4%에서 2023년 52.6%로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.

한편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에는 자경농민이 영농의 계승을 목적으로 자녀에게 농지 · 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 1억 원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. 이 제도는 영농승계로 농업 · 축산업 용지를 취득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돋고, 농촌 인력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.

또한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4에는 농촌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

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. 이는 귀농·귀촌을 간접 지원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로, 농촌 지역의 고령화 완화와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귀농하는 영농자녀 및 후계농 유입을 지원하고 있음.

이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촌주택·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 및 귀농·귀촌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(안 제71조 및 제99조의4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.	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 ② ~ ⑧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